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17.

담양군의회 의장



1. 규칙명 :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와 관련하여 담양군의회 규칙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의 표기와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명확성 제고 및 입법기

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윤리특별위원회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대신하는 기능 삭제
나.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규정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3. 17. ~ 3. 22.(5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규칙안 : 붙임 참조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존중해야”를 “존중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적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개정)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담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소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아니하는 것을”을 “않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부터 마목(종전의 라

목)까지 중 “**것**”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을 “**주의 환기** · **진정**(陳情) · **비판**”으로 하며, 같은 목 및 사목(종전의 바목) 중 “**것**”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및 저작권
에 속하는 경우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

아. 담양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제4조 본문 중 “**제출과제**”를 “**제출 과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안의 공동제출**)”을 “(**제안의 공동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제안자**”를 “**공동 제안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제안**”을 “**공무원 제안**”으로 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상금”을 “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채택제안의 실시성”을 “채택 제안의 실시 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을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안업무를 주관하는”을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으로, “제안업무를 담당하는”을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 세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사기준 등)”을 “(심사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하는 경우에는”을 “판단할 때는”으로, “추정금액”을 “추정 금액”으로 한다.

5. 적용 범위

제13조제1항 중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기 위하여”를 “확인하는 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결정 등)”을 “(채택 제안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모기간”을 “공모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채택제안으로”를 “채택 제안으로”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를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 제안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택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등급)”을 “(채택 제안의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채택제안”을 각각 “채택 제안”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모범 공무원 대상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경우”를 “때,”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을 “채택 제안의 제안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으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시상)”을 “(채택 제안의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택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부상금”을 “부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택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실시성”을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으로, “지급기준”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을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채택제안의 실시”를 “채택 제안의 시행”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으로, “우대조치”를 “우대 조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채택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채택제안의 실시”를 “채택 제안의 시행”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실시)”를 “(채택 제안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시행하여야”로, “제안실시부서”를 “제안 시행부서”로, “실시하게”를 “시행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실시부서”를 “제안 시행부서”로, “제안업무”를 “제안 업무”로, “제안실시계획”을 “제안 시행 계획”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2항) 중 “제안실시부서”를 “제안 시행부서”로, “실시할”을 “시행할”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을 “(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를 “채택 제안이 직접 시행하기”로, “실시할”을 “시행할”로 한다.

제22조 중 “채택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를 “적용할 수 있다고”로, “실시를”을 “시행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실시성과의 측정)”을 “(시행 성과의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안실시부서”를 “제안 시행부서”로, “실시성과”를 “시행 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실시부서”를 “제안 시행부서”로,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을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를”로, “전문

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관리기간)”을 “(관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택 제안”을 “채택 제안”으로, “공무원제안”을 “공무원 제안”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위임사항)”을 “(위임 사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외한다)을”을 “제외한다) 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자문위원회는 「담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⑤ ~ ⑦ (생략)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 ----- ----- ----- 존중하여야 --.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12조(준용) ----- ----- ----- 따른다.

제2조(「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서비스·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신설>

-----.

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
-----.

1. ----- 담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않는 경우를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u>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u>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 설> 2. 3. (생략)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u>제출과제</u>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u>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u> 다. ----- - <u>경우</u> 라. ----- - <u>경우</u> 마. ----- - <u>경우</u> 바. ----- - <u>주의 환기·진정(陳情)·비판</u> --- <u>경우</u> 사. ----- - <u>경우</u> <u>아. 담양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제출) ----- ----- ----- ----- -- <u>제출 과제</u>----- -----.
---	--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
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
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
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
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신 설>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
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

-----.

제5조(제안의 공동 제출) -----

때에는 -----

-----.

----- 공
동 제안자-----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
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
入)하지 아니 한다.

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 제안이 우선한다.

④ (생략)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③ ----- 공무원 제안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채택 여부 -----
--

2. ----- 부상 -----

3. 채택 제안의 실시 성과-----

4. (현행과 같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당연직 위원-----

----- 전문 분야-----

-----.

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
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
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가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생 략)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
----- 연임할 -----
----.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

인정할 때 -----

-----.

② ----- 재적위원 --

-----.

③ -----

----- 제안 업무를 주관
하는 -----
--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
-----.

제11조(운영 세칙)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 기준 등) ① -----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적용 범위

② ----- 판단

할 때는 -----

----- 추정 금액-----

-----.

제13조(의견조치 등) ① -----

-----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 -----

-----.

② -----

확인하는 데 -----

-----.

③ (생략)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
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
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
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
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
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
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
다.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채택 제안의 결정 등) ①

----- 공모 기간-----

-----.

② ----- 채택 제안으로

----- 관리 기간

-----.

③ 채택 제안-----

-----.

제15조(채택 제안의 등급) ①

채
택 제안-----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
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
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
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
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
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

② -----
----- 채택 제안-----

모범 공무원 대상자-----
-----.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
공무원-----

----- 때, -----

-----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
급-----
-----.

② ----- 채택 제안의 제안자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③ -----
----- 공무원-----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

-----.

제17조(채택 제안의 시상) -----
채택 제안-----
범위-----
----- 부상-----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

--- 채택 제안-----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② ----- 제23조에 따른 실시성-----

----- 지급 기준-----
-----.

제19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
-----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

② ----- 채택 제안의 시행-----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

----- 우대 조치-----
----- 채택 제안-----
-----.

----- 채택 제안의 시행 -----

제20조(채택 제안의 실시) ① ---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시행하여야 --
-----제안 시
행부서-----
---- 시행하게 -----.

② 제안 시행부서-----

----- 제안 업무-----
----- 제안 시행 계획--
-----.

③ 제안 시행부서-----
----- 시행
할 -----
-- 때는 -----
-----.

제21조(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 -- 채택 제안이 직접 시행하기-----
----- 시행할 -
-----.

제22조(제안의 확산) ---- 채택
제안-----
----- 적용할 수
있다고 -----

----- 시행
을 -----.

제23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사항) (생략)

제27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 성과의 측정) ① 제안 시행부서-----
----- 시행 성과-----
-----.

② 제안 시행부서-----
-----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
를 -----
---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
에 시행 성과의 측정 결과----
-----.

제24조(관리 기간) ---- 채택 제
안-----

----- 공무원 제안---

-----.

제26조(위임 사항) (현행과 같음)

제27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

----- 제외한다) 을 -----
--.